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 의 자 : 김영환 · 김남희 · 박상혁
복기왕 · 양부남 · 이소영
장철민 · 전현희 · 최기상
허영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제잉여금을 「지방교부세법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14년 「지방교부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.

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「지방교부세법」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
(안 제9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2항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(생 략)	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 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 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(이하 “세계잉여금”이라 한다)은 「지 방교부세법」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 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5조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⑨ (생 략)	③ ~ ⑨ (현행과 같음)